

## 용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17호  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1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징계의 관할)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.

제3조(징계의 종류) 징계의 종류는 파면, 감봉, 견책으로 하며, 징계의 효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4조(준용규정)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및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18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